

인천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가단2490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문옥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국
변 론 종 결 2022. 3. 22.
판 결 선 고 2022. 4.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4. 6.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7. 접수 제1414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와, ① 2015. 6. 30.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2억 7,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5. 6. 30.부터 2016. 6. 29.까지(이후 2021. 6. 25.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6. 6. 10. C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1억 2,75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6. 6. 10.부터 2017. 6. 9.까지(이후 2021. 6. 4.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을, ③ 2016. 11. 1.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2억 1,250만 원(이후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6. 11. 1.부터 2017. 10. 31.까지(이후 2021. 10. 29.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3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C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원고가 위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와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2019. 4. 1.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8%이다), B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5. 7. 1. 1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억 원을, 2018. 7. 16. 3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억 원을, 2016. 6. 29. D은행으로부터 2차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억 5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으나, 2021. 4. 15. 회생신청을 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D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21. 6. 4. 중소기업은행에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271,668,895원, 3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81,557,846원, 2021. 6. 1. D은행에 2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28,312,385원을 각각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후 원고가 보증료환급금 등으로 173,550원을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여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은 271,495,345원이 되었는데, 대위변제금에 충당한 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충당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이 38원 발생하였고, 원고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98,782원 남아 있다.

다. B는 2021. 4. 6. 피고와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7. 접수 제141440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65,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은 약 62억 원이 넘게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각 대위변제에 의하여 발생한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채무자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나 이에 대한 B의 연대보증채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B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조현욱

별지